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03호

2025년도 제11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5년 제11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11. 1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주요 업무 (세부 업무는 붙임 기술서 참고)
	1개 분야		1명		
이민정책과 (본청)	다문화가족 업무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7급상당)	1명	임용일 ~ 1년 (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상담, 교육, 도정홍보, 보조사업 등)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교류 창구 및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업무 관련 통·번역 업무 지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1년 추가 연장 가능

※ 직제·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용 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직무기술서' 참고

2.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성별** :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 **국　　적** : 자격요건(국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분	자격 요건(❶+❷ 모두 충족할 것)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① 다음의 국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 허가(한국 국적 취득)를 받은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계속하여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② 위 국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족센터, 재단, 민간기관, 법인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외국인 대상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사례관리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 한국어능력(TOPIC)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등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다문화 언어지도사, 통번역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 사무보조, 행정지원, 연구보조, 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3.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4.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해당직급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35시간)하여 책정

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9,840	42,501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 대 사 항	장기근무 경험자,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 (분야별 우대요건 참고)

○ **2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 · 응답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합격자발표
'25. 11. 10.(월) ~ 11. 20.(목)	'25. 11. 17.(월) ~ 11. 20.(목)	서류전형	'25. 11. 25.(화)
		면접시험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고

※ 합격자 발표: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게시

※ 시험일정은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별지1~10호(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1-286-337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 접수 권장

○ 방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까지 제출 가능 * 대리 접수도 가능하나, 서류 미비 등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봉투 겉표지에 "2025년 제11회(재) 전라남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제출서류 분실 방지 등을 위해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 061-286-3372)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하지 않고 클립이나 파일 등으로 제출

○ 응시표는 배부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발신번호:☎061-286-3372)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 응시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서류합격 시 면접은 응시번호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7천원)

※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 절대 불가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기준일: 원서 접수일 현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은 <u>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u>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⑩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공증 첨부

- 최종 학력이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반드시 함께 제출
- 최종 학력이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반드시 함께 제출

⑪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u>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반드시 기재)</u>, 근무기간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u>반드시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u>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u>단순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u>며, <u>민간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필요시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u>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예시: 주20시간 근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실 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국세청 (☎126)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예시: 주 20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연구원 등은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연수 및 수습기간, 단순 인턴 및 업무 보조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증빙자료(계약서, 급여내역, 실적, 급여 지급기관의 공문 등)가 없을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⑫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발급기간: 전체**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⑬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⑭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10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⑮ 가족관계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이거나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여야 함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⑥ 학력 및 경력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 및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이후에는 응시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추가로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 061-286-3372)**

► **직무 관련 문의: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061-286-2591)**

붙 임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다문화가족 업무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7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주요업무	○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담, 교육, 도정홍보, 보조사업 등)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교류 창구 및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업무 통·번역 업무 지원 ▪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지원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한국문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식 ○ 사회복지 및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지식 ○ 통·번역 등에 대한 지식 ○ 한국어 구사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다문화가족 업무지원**	
	경력	○ **다음의 국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 허가(한국 국적 취득)를 받은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계속하여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상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위 국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족센터, 재단, 민간기관, 법인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외국인 대상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사례관리분야 근무 경력
우대요건		○ 한국어능력(TOPIC)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등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문화 언어지도사, 통번역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